

「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 지침」 개정 신규대비표

현행	개정안	비고
<p>제11조(공통 분야)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가 포 함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영 제72조제4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 우로서 기타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 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 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제1항제4호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가 포함된다.</p> <p>1. ~ 6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설></u></p>	<p>제11조(공통 분야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.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<u>수입자가 수입물품의 거래조건 또는 해당 거래와 관련된 회계처리기준 및 방법 등이 변경된 것을 반영하지 못하 여 일부 수입신고에 오류가 발생한 경 우로서 그 밖의 수입신고에 대해서는</u></p>	<p>○ 일부 기간이나 일부 품목의 세액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경미한 과실의 인정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 data-bbox="427 1382 600 1422"><신설></p>	<p data-bbox="954 236 1585 408"><u>과세표준 및 세액을 적정하게 신고한 것이 「관세법」 제1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관세조사 결과 확인되는 경우</u></p> <hr/> <p data-bbox="965 475 1563 711">(예시1) 가격정책 변경내용을 회계시스템에 반영하면서 수치입력 착오로 일시적으로 낮은 과세가격이 신고된 경우(변경 직후인 2개월은 신고오류가 발생하였으나, 전후 18개월은 적정 신고함)</p> <p data-bbox="965 730 1563 1018">(예시2) 해외 본사에서 가격정책을 변경하면서 적용시점에 대한 사실을 수입자의 재무부서가 통관부서에 정확하게 통지하지 않아 관세조사 대상기간이 되는 2분기 중 2분기에 해당하는 일부 수입신고건에 대해 신고오류가 발생한 경우</p> <p data-bbox="965 1037 1563 1324">(예시3) 글로벌 차원에서 가격정책을 개편하면서, 제품군별로 판매관리비 배분기준을 변경하였으나, 적시에 회계시스템에 반영하지 못해 전체 품목 중 10% 미만의 품목에 과거 통계가 반영된 결과 일부 신고오류가 발생한 경우</p> <hr/> <p data-bbox="927 1398 1585 1437"><u>8. 세관장이 과세처분 결정에 대한 견해</u></p>	<p data-bbox="1621 1382 1989 1422">○발급사유 유형 추가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설></u></p> <p>7. <u>제1호부터 제6호까지</u> 및 제12조제1항, 제13조, 제14조제1항, 제15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타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</p>	<p><u>가 명확하지 않아 상급기관에 질의를 하여 결정하는 등 세법해석상의 의의(疑意)로 인한 견해 대립이 심한 경우</u></p> <p>(예시) 과세여부에 대한 상반된 유권해석이 존재하고, 법 해석상에 불명확한 부분으로 의견 대립이 심하여, 기획재정부 질의를 통해 비로소 세관장이 과세여부를 확정할 경우</p> <p>9. <u>세관장이 당초 경정한 처분에 대하여 관세청 내부 또는 감사원의 감사 지적에 따라 새로이 과세처분을 한 경우</u></p> <p>(예시) 세관장이 경정한 처분한 사안에 대해 자체 감사부서에서 업무감사를 실시한 결과, 세관장의 과세가격 산정방법에 문제점을 지적하여 증액 재경정한 경우</p> <p>10. <u>제1호부터 제9호까지</u> ----- ----- -----</p>	<p>○ 발급사유 유형 추가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>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</p> <p>④ ~ ⑤ (생략)</p>	<p>----- -----</p> <p>④ ~ ⑤ (현행과 같음)</p>	
<p>제12조(과세가격 분야)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변경된 경우로서 제4조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가 포함된다.</p> <p>1. 「관세법」 제30조제1항 각 호(이하 “가산요소”라 한다)의 금액을 거래가격에 가산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</p> <p>가. 수입자가 가산요소의 존재를 인식하는 데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어 가산요소가 과세가격에 누락되었는 인식이 없는 등 통상의 주의의무만으로 정확한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</p>	<p>제12조(과세가격 분야) ①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수입자가 거래가격에 「관세법」 제30조제1항 각 호의 금액(이하 이 호에서 “가산요소”라 한다)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</p> <p>가. 가산요소를 거래가격에 포함하려면 상당한 지식과 주의가 요구되어 수입자의 정확한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</p>	<p>○ 조문정비</p> <p>○ 조문정비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>(예시)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제품개발비가 수입자와 수출자 이외의 제3자 간에 지급되어 수입자가 이를 인식할 수 없어 수입자에게 정확한 가격 신고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경우 등</p> <p>나. (생략)</p> <p>2. 「관세법」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서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</p> <p>가. 수입거래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수입자가 신고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것으로 인식하였을</p>	<p>(예시1)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제품개발비가 수입자와 수출자 이외의 제3자 간에 지급되어 수입자가 이를 인식할 수 없어 수입자에게 정확한 가격 신고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경우</p> <p>(예시2) 수입자가 제3자에게 지급한 권리사용료로서 해외 상표권자와 수출자가 어떤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지 알 수 없고, 상표권자에 대한 권리사용료 지급의무가 수입물품 계약의 전제가 되는 거래조건인지를 파악하는데 전문성이 필요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</p> <p>나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----- <u>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</u> -----</p> <p>가. ----- ----- ----- ----- <u>인식할 수 밖</u></p>	<p>○ 조문정비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>것</p> <p><u>나. 수입자가 가목의 사실을 세관장에게 입증하는 경우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<u>에 없음을 세관장에게 입증하는 경우</u></p> <p><u>나. 「관세법」 제3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인식하는 데에 상당한 지식과 주의가 요구되어 수입자의 정확한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</u></p> <p>.....</p> <p>(예시1)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할인된 가격을 적용하여 물품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 할인이 동종 업계의 상관행이며, 국내 주요경쟁사 역시 유사한 형태의 가격신고방법을 택하고 있어, 해당 할인을 정상적인 가격결정 방법으로 인식한 경우</p> <p>(예시2) 수입자가 국내에서 지불한 하자보증비용이 수출자가 부담해야 하는 하자보증의무를 대신 수행하면서 거래가격에서 할인을 받은 것인지, 아니면 수입자가 스스로 판매촉진을 위해 집행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</p> <p>.....</p> <p><u>다. 무상물품의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</u></p>	<p>○ 특수관계자간 거래 등에 대한 통상의 주의의무 적용</p> <p>○ 발급사유 유형 추가</p>
<p><u><신설></u></p>		

현행	개정안	비고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설></u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하여 유사물품과의 단가 차이를 점검하거나, 거래 상대방에게 과세가격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등의 노력을 한 경우</u></p> <hr/> <p>(예시) 무상물품의 과세가격을 신고할 때에 동종·동질 또는 유사 물품과의 단가 차이를 점검하고, 판매자에게 가격정보(구입가격)를 확인하는 등 통상의 주의의무를 기울였음에도 세액오류가 발생한 경우</p> <hr/> <p>3. 「관세법」 제30조제2항 각 호의 금액을 거래가격에 과다하게 공제한 경우로서 수입자가 해당 금액을 산정하는 데에 상당한 지식과 주의가 요구되어 수입자의 정확한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</p>	<p>○ 발급사유 유형 추가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 data-bbox="430 571 600 609"><신설></p> <p data-bbox="430 1181 600 1219"><신설></p>	<p data-bbox="967 268 1579 507">(예시) 수출자가 제공한 국내발생비용 산출내역서에 따라 과세가격 공제금액을 신고하였으나, 해당 내역서 자체에 오류가 있거나, 국내발생 여부를 정확히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일부 과다 공제된 경우</p> <p data-bbox="929 571 1585 810">4. <u>세관장이 선행 관세조사시 사실관계를 확인한 사실이 있으며 과세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써 과세가격 결정 관련 중요한 사실관계가 동일한 경우</u></p> <p data-bbox="967 858 1579 1145">(예시) 세관장이 선행 관세조사를 할 때에 권리사용료 계약과 지급액을 검토하여 비과세 의견을 표명하였으나, 차기 관세조사를 할 때에 사실관계는 동일하나 수입물품과의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과세한 경우</p> <p data-bbox="929 1181 1585 1356">5. <u>수입자가 세관장의 행정지도에 따라 과세가격을 신고하였으나, 관세조사시 과세가격 산정방식을 변경한 경우</u></p>	<p data-bbox="1624 571 1989 609">○ 발급사유 유형 추가</p> <p data-bbox="1624 1181 1989 1219">○ 발급사유 유형 추가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>② (생략)</p>	<p>(예시) 세관장의 납세안내에 따라 생산지원비를 수입신고 건별로 배분하였으나, 관세조사시 해당 배분방법에 일부 오류를 확인하여 이를 바로 잡아 과세한 경우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	
<p>제13조(품목분류 분야) 수입물품에 적용하는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로서 제4조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가 포함된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40px;"><u><신설></u></p>	<p>제13조(품목분류 분야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<u>수입자가 자체 충분한 노력을 통해 기존 유권해석 사례, 판례 등에 비추어 품목분류를 신고한 경우로서 수입자의 과실이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</u></p>	<p>○발급사유 유형 추가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설></u></p>	<p>(예시1) 수입물품이 기존에 사전심사를 받은 물품과 형태·구조·기능이 거의 동일하여 신규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</p> <p>(예시2) 분석회보 결과에 따라 품목분류를 신고하였으나, 추후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통해 회보 받은 결과와 품목분류가 달라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</p> <p>(예시3) 통관단계에서 심사를 통해 세관에서 품목분류 정정을 요구하여 정정하였으나 추후 정정 조치한 신고 세번에 오류가 확인되는 경우</p> <hr/> <p><u>7. 유사한 구조·기능을 가진 물품의 품목분류에 관한 유권해석이 다양하며, 품목분류 변경고시가 되는 등 명확한 품목분류 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</u></p> <p>(예시) 물품의 형태·구조·기능이 복잡하여 품목분류 유권해석 상이 사례가 여러 건이 있고, 세관장, 분석소장, 분류원장도 다양한 품목분류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정확한 품목분류 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</p>	<p>○발급사유 유형 추가</p>

현 행	개 정 안	비 고
<p align="center"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19조(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사전 심의요청) ① 수입자는 관세조사 등의 결과통지를 받은 경우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여부에 대해서 「관세법」 제118조의4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수입자는 발생부서가 속한 세관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하며,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별표 2의 절차에 따라 심의한다.</u></p> <p><u>③ 그 밖에 사전 권리구제 절차에 관한 세부내용은 「관세청 납세자 보호에 관한 훈령」 및 관련 지침에 따른다.</u></p>	<p>○납보위를 통한 사전 권리구제절차 반영</p>
<p><u>제19조(수입자가 수정신고하거나 세액이 납부된 사안) ① 부가가치세를 추가 납부하였으나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수입자가 영 제72조제6항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</u></p>	<p><u>제20조(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신청) ① 수입자는 추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제19조의 심의요청과는 별도로 영 제72조제6항에 따라 해당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세관의 납세심사부서에</u></p>	<p>○납보위를 통한 사전 권리구제절차 반영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>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세관의 납세심사부서에서 동 신청서를 접수한다. 이 경우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서는 <u>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.</u></p> <p>② <u>제1항 전단에</u>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납세심사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. 이 경우 납세심사부서에서는 전자통관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<u>별표 2의</u> 절차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대상 여부를 발생부서에 확인요청한다.</p> <p>1. 제17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: 영 제72조제7항에 따라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</p> <p>2.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: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미발급을 등록한 동일</p>	<p><u>별지 제1호서식의</u>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<u>제1항에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별표 3의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<u>제17조의 경우:</u>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2. <u>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:</u> ----- ----- -----</p>	

현행	개정안	비고												
	<p>제2조(미발급에 대한 사전 권리구제 절차 적용례)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22. 1. 1. 이후 관세조사 등의 결과를 통지한 분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.</p>													
<p><신설></p>	<p>[별표2]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절차 (제19조)</p> <p>* 본청 심의 절차 : (세관 담당관) 본청 심의 요청 → 본청 납보위 개최 → (모호관) 심의결과 통지</p> <p>[심의요청 관할 구분]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936 1203 1525 1393"> <thead> <tr> <th>세관</th> <th>관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인천본부 및 권역내 + 평택세관</td> <td>인천세관 세관운영과(납세자보호담당관)</td> </tr> <tr> <td>서울본부 및 권역내</td> <td>서울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실</td> </tr> <tr> <td>부산본부 및 권역내</td> <td>부산세관 세관운영과(납세자보호담당관)</td> </tr> <tr> <td>대구본부 및 권역내</td> <td>대구세관 세관운영과(납세자보호담당관)</td> </tr> <tr> <td>광주본부 및 권역내</td> <td>광주세관 세관운영과(납세자보호담당관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세관	관할	인천본부 및 권역내 + 평택세관	인천세관 세관운영과(납세자보호담당관)	서울본부 및 권역내	서울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실	부산본부 및 권역내	부산세관 세관운영과(납세자보호담당관)	대구본부 및 권역내	대구세관 세관운영과(납세자보호담당관)	광주본부 및 권역내	광주세관 세관운영과(납세자보호담당관)	<p>○ 사전 권리구제절차 신설에 따른 발급 신청 절차</p>
세관	관할													
인천본부 및 권역내 + 평택세관	인천세관 세관운영과(납세자보호담당관)													
서울본부 및 권역내	서울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실													
부산본부 및 권역내	부산세관 세관운영과(납세자보호담당관)													
대구본부 및 권역내	대구세관 세관운영과(납세자보호담당관)													
광주본부 및 권역내	광주세관 세관운영과(납세자보호담당관)													

현행	개정안	비고
	<p>※ 납세자보호위원회 ‘사전 심의요청’와 ‘발급신청’ 절차 예시</p> <p>□ 납세자보호위원회 사전심의 절차(지침 제19조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22. 1. 1. 관세조사 결과통지 ○ '22. 1. 2. 사전 심의요청(수입자 → 납세자보호담당관) ○ '22. 1. 31. 심의결과 통지(납세자보호담당관 → 수입자 & 발생부서) <p>□ 발급신청 절차(지침 제20조)</p> <p>1) 심의결과 통지 이후 수정신고 또는 통지전에 경정을 통해 세액을 납부한 경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22. 1. 15. 수정신고(수입자) 또는 경정(발생부서) ○ '22. 2. 1. 발급신청(수입자 → 세액을 납부한 세관의 납세심사부서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납보위에서 발급을 결정한 경우)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발급신청이 가능하며, 세부절차는 지침 제20조에 따름 - (납보위에서 미발급을 결정한 경우) 불복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발급신청하여 세액을 납부한 세관의 발급신청 거부처분 필요. 세부절차는 지침 제20조에 따름 <p>2) 심의결과 통지 후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22. 2. 1. 경정(발생부서 → 수입자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발생부서는 납보위 심의결과에 따라 경정할 때에 발급 / 미발급을 선택하여 경정 ○ '22. 2. 15. 발급신청(수입자 → 세액을 납부한 세관의 납세심사부서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불복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발급신청을 하여야 하며, 세액을 납부한 세관의 발급신청 거부처분 필요. 세부절차는 제20조에 따름 	
[별표2] (생략)	[별표3] (현행과 같음)	○ 조문 정비

※ 단순 오탈자, 인용조문 오류 등에 대해서는 신규대비를 생략함